

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2. 8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정 이 유

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구도시 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○ 기능(제2조)

-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
-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, 자문
-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

○ 구성(제3조)

- 구성원수 :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
- 위 원 장 : 구청장
- 부위원장 : 부구청장
- 위 원 :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
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
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-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될 수 있으며
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○ 회의소집, 의결(제5조)

- 회의소집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
- 의 결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○ 소위원회(제6조)

-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
-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

○ 간사, 서기(제7조)

- 간 사 : 도시개발과장
- 서 기 : 업무주관계장

3. 관계법령

-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
-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